



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2016년도 제1차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

2016년도 우리구 표준지 공시지가 1,212필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 제5조 및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‘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’ 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의견청취

구 분	대 상 필지수	심의 결과			비 고
		적정	조정	기각	
표준지공시지가	1,212	1,212	-	-	

- 붙임 1. 2016년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 1부
 2.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(안) 1부
 3. 2016년 표준지 심의자료 1부
 4. 심의서1부 (별첨). 끝.

